

2025년 [동두천시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(추가모집)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동두천시와 연계하여 북부권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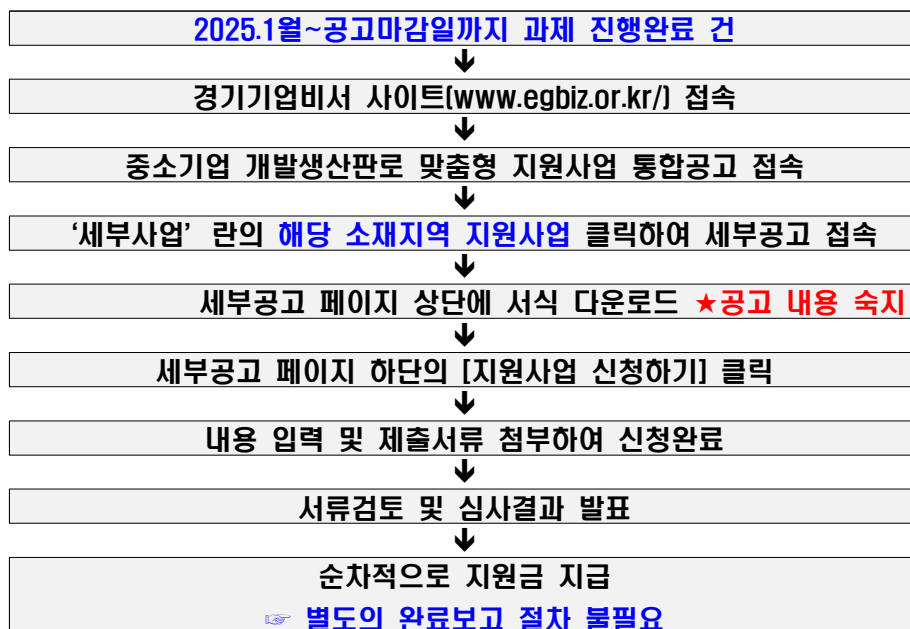
2025년 8월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□ 모집개요

- 신청기간 : 2025년 8월 18일(월) ~ 8월 27일(수) 17시까지 ※ 예산 소진시까지 연장 가능
- 결과발표 : 2025년 9월 5일(금) 예정, 회사(담당자) 이메일로 개별 안내
- 접수방법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자격 : 해당 시군에 **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연매출 120억원 이하**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상세 범위 별표1,2 참고)
- 지원규모 : **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, 분야별 지원한도 내 소요비용의 60% 지원**
(단, **기업당 연간 최대 3회로 선정 횟수 제한**,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% 제외)
※ 1~3차 선정 결과 총 3회 수혜 기업은 추가모집 모집에 지원 불가,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금 한도액 달라질 수 있음

□ 운영 절차

동두천 지원 과제



□ 세부 지원내용

구분	세부과제 / 지원한도(총소요비용 60%)	세부내용
창안 개발	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200~500만원	국내상표/해외상표/디자인출원/국내특허/실용신안/해외특허/PCT ※ 각 세부 분야별 지원한도액 상이하므로 세부운영기준 필독 예시) 총 소요비용 3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200만원(60%) 지원가능
	국내·외 규격인증 (국내)300만원 (해외)700만원	국내외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컨설팅비(통합인증비), 시험비 예시) 총 소요비용 500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300만원(60%) 지원가능
제품 생산	시제품제작_금형 1,500만원	프레스 금형, 플라스틱 금형, 초경금형, 분말야금 금형, 다이캐스팅 금형, 단조금형, 압출금형 예시) 총 소요비용 2,500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1,500만원(60%) 지원가능
	시제품제작_목업 500만원	외관 목업, 워킹 목업, 전시용 목업 예시) 총 소요비용 8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500만원(60%) 지원가능
	시험·분석비 200만원	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기관, 연구소 등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예시) 총 소요비용 3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200만원(60%) 지원가능
판로 개척	홈페이지 제작 200만원	한글/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또는 전면개편 비용 예시) 총 소요비용 3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200만원(60%) 지원가능
	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300만원	제품 박스, 봉투, 포장지, 스티커 등 포장 디자인/제작비용 예시) 총 소요비용 500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300만원(60%) 지원가능
	카탈로그 제작 200만원	외국어 또는 국문 제품카탈로그 제작비용 예시) 총 소요비용 3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200만원(60%) 지원가능
	홍보동영상 제작 일반 300만원 3D 400만원	기업 및 제품 홍보 일반 및 3D 영상물 제작비용 예시) 총 소요비용 667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400만원(60%) 지원가능
	전문잡지광고 300만원	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예시) 총 소요비용 500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300만원(60%) 지원가능
	국내·외 전시박람회(국내)300만원 (해외)500만원	2025년 연중 참가완료한 전시회 예시) 총 소요비용 834만원(부가세 제외)일 때 500만원(60%) 지원가능

※ 과제별 세부내용(지원여부/기준/비율/한도/유의사항, 제출서류 등)은 첨부파일의 세부운영기준 참조

□ 심사 및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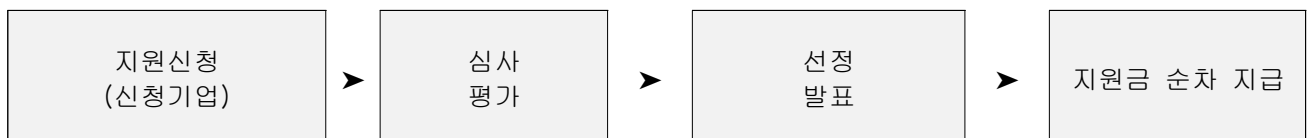
○ 추가모집 신청과제는 서면평가만 실시

○ 심사평가표에 의해 서면평가(정성 및 정량평가)

구분	평가방법	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사전/사후 신청과제	서면평가	11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타당성(20), 지원효과(20), 재무건전성(30), 기타(30), 가점(10)

- 미선정기업 중 선정기업의 약10~20%의 평가점수 상위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, 중도포기 및 취소 기업 발생 시 잔여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결정

□ 추진 절차



□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내용
필수	① 지원신청서	-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 작성
	② 지원금 신청서	- 과제별 한글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	③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	- [제2호 서식] 작성
	④ 사업자등록증명	- '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
	⑤ 지방세 납세증명서(완납증명)	-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* '25년 7월 19일 이후 발급된 서류
	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(국세청 발급, 세무사 확인본)	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기업이 아닌 경우 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* 단, 재무제표 미제출시 재무건정성 유동비율점수 최저점 부여
	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2건)	- '23년 12월 귀속분과 '24년 12월 귀속분 *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
	⑧ 중소기업확인서	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발급 (https://sminfo.mss.go.kr)
	⑨ 대행업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	- 대행업체 발급
	⑩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	- 대행업체 발급
	⑪ 지출증빙서류	- 산출물(출원서, 규격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) - 전자세금계산서(영수증) - 이체확인증 - 이체확인증의 신청기업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* 과제별 증빙서류 차이 있으니 세부운영기준 [제출서류]란 확인 필수
* 위 ②~⑪ 필수서류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선택 (가점)	⑫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	-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* 중소기업청 창업넷(www.bi.go.kr) 발급
	⑬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	-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시 제출 *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
	⑭ 공장등록증명원	- '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* 민원24(www.minwon.go.kr)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(www.factoryon.go.kr) 발급
	⑮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	- G-STAR기업(경기도 스타기업,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) 경기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일하기좋은기업, 착한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중소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녹색인증기업,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ESG 진단·평가 우수기업 인증,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
	⑯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	- 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, 국내외 규격인증, 신기술마크, 품질인증 등
<p>· ①~⑪은 필수 제출서류이며, ⑫~⑯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</p> <p>· 사후신청과제 신청 시 각 단위과제별 [제출서류]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</p> <p>* 경기기업비서 지역별 공고 페이지 하단의 [지원사업 신청하기] 클릭하여 해당 란에 제출서류 업로드</p> <p>* 필수 첨부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</p> <p>*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</p>		

□ 기타 사항

○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, **신청과제 변경은 불가함**
-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. **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사유 해당**
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미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① 전전년도 재무제표와
②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)을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**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** 제출
※ **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**
-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**공장등록증명원(민원24, 팩토리온 발급)** 제출
※ **공장등록증은 불인정**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www.bi.go.kr(창업넷) 확인), 시·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 시, 경기창업벤처센터 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○ 신청기업이 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

○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

-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
- ①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④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□ 문의처

- e-mail : bookbu@gbsa.or.kr ※ 이메일 문의시 제목에 **지역명을 반드시 표기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권역구분	지 역	담당 연락처
북부권역 (북부권역센터)	동두천	031-850-7131

[첨부1] 과제별 지원내용

구분	지원 단위사업	세부내용	최대 지원한도 (지원비율)	비고	당첨률
창안 개발	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	디자인, 상표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(상표출원 : 국내 및 해외 / 디자인 출원 : 국내)	특허(520만원) 실용(360만원) 국내상표(200만원) 국내디자인(280만원) 해외상표(500만원) (60%)	사후 지원	○
		실용신안, 국내특허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대행 기관 수수료 등	500만원 (60%)		○
		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	500만원 (60%)		○
	국내·외 규격인증 지원	(국내) 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	300만원 (60%)		○
		(해외) UL,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	700만원 (60%)		○
산업기술 정보제공	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টে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, 기업체에 제공	200만원 (100%)	마감	x	
제품 생산	시제품 제작지원 (금형·목업)	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	금형(1,500만원) 목업(500만원) (60%)	사후 지원	○
	시험분석 지원	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	200만원 (60%)	사후 지원	○
판로 개척	홈페이지 제작지원	한글 / 외국어 홈페이지,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지원	200만원 (60%)	사후 (사전) 지원	○
	국내·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	국내·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	국내(300만원) 해외(500만원) (60%)	사후 지원	○
	제품패키지 개선 지원	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비용 지원	300만원 (60%)	사후 (사전) 지원	○
	국내홍보 판로 지원	전문잡지	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	300만원 (60%)	사후 (사전) 지원
홍보 동영상		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(일반영상 또는 3D 영상)	일반(300만원) 3D(400만원) (60%)	○	
카탈로그		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	200만원 (60%)	○	

※ 기본적으로 사후과제로 신청 가능하지만 ‘홈페이지, 제품패키지, 국내홍보판로’ 단위사업의 경우 담당자에 직접 문의 후 사전과제로 신청 가능(별도 제출 양식 필요)

[별표 1]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 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[별표 2]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	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4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4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